

## 24. 3. 8. 공포 정치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

### I 공직선거법

#### □ 국회의 의원정수 조정(§ 21①)

- 지역구국회의원 253명 ⇨ 254명, 비례국회의원 47명 ⇨ 46명

#### □ 감염병 격리자등 투표시간에 대한 예외 규정(§ 155)

- 중앙선관위가 질병관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격리자 등을 위한 투표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.

#### □ 제22대 국선에 적용할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마련(별표 1).

#### □ 선거구 획정에 따른 부칙 신설

##### ○ 자치구·시·군 일부 분할 특례(§ 25① 예외)

- 강원 춘천시 일부 분할 ⇨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을
- 전남 순천시 일부 분할 ⇨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
- 서울 성동구 일부 분할 ⇨ 서울 중구성동구를
- 경기 양주시 일부 분할 ⇨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
- 전북 군산시 일부 분할 ⇨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

-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에 관한 특례,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관한 경과조치 등 선거구가 변경되거나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 등

### II 정치자금법

- 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·지역구국회의원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 회계책임자에 관한 경과조치 등